「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」

용역계약특수조건

2026. 09.

한국지역난방공사

제 1 조 (총칙)

본 용역계약 특수조건(이하 "특수조건"이라 한다)은 **"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"**에 적용한다.

제 2 조 (용역기간)

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 3 조 (일반규정)

① 본 용역은 계약당사자 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
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, 지침에 따라 수행하되,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.

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,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.

⑤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)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.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,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,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
⑦ 발주자가 확인한 사항이라도 과업 범위 내의 경미한 변동 및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, 관련비용은 상호협의한다.

⑧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.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4 조 (용역의 범위)

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용과 같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용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, 상호

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용역의 착수)

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, 계약일로부터 **7일**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인력 명단은 자격 확인용으로 활용한다.)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착수계
2. 점검대행기관 증빙서류
3. 현장대리인계
4. 용역수행계획서
5. 사진첩(착수 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)
6.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(대상자에 한함)
7. 보안서약서(대표자 및 책임·참여기술자 전원)
8.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원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

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,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용역의 수행)

①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, 발주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,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충족한 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다.

④ 용역 수행과정 중 발생한 대상 시설물, 주변 시설물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인력의 투입 및 교체, 업무감독)

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 불충분, 역무 투입 지연 등 사유로

인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검사)

① 모든 검사, 조사, 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, 작성자, 총괄 책임자 또는 책임 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**14일** 전까지 예비성과품(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부 (A4, 컬러),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(HWP, PDF, CAD 등, e-메일 별도 제출))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수정,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·제출한다.

제 9 조 (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)

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

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우리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③ 계약상대자의 고의, 과실, 주의, 태만,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,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제 10 조 (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)

①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**1년**으로 한다.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,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금액의 **100분의 2**로 한다.

제 11 조 (선금)

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선금 지급금액, 지급방법, 선급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'입찰 및 계약집행지침'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.

제 12 조 (대가의 지급)

①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, 기성대가 산정을 위한 기성률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의 용역 공정예정표에 명기된 공정률에 의한다.

② 계약서 상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, 계약물량 대비 수행하는 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감비용은 실적정산한다.

③ 본 용역의 비용 중 정산 분은 준공 시 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용역대가 중 정산분(여비 및 체재비(일비, 식비 등), 보고서 인쇄비)은 전액 적격증빙자료(출장복명서,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비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적격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하되, 개별임금 수준을 특정할 수 없다.

⑤ 이 외 사항은 "용역계약일반조건"에 따르며,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 13 조 (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)

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, 선금,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4 조 (지체 상금)

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,000분의 1.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,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
제 16 조 (자료제공 및 기술지원)

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,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 17 조 (손해배상)

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재설계 및 손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는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보안)

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·정리된 자료 및 정보, 성과품(보고서 및 관련자료)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확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·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,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,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해석)

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,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단,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.

② 본 계약서,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 20 조 (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)

①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.

③ 기타 세부사항은 “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”에 따른다.

제 21 조 (기타사항)

① 용역수행 중 용역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**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**, 관련 증빙은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달리 협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,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을 따른다.